

미디어센터운영규정

(폐지 2019.09.06.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동명대학교와 관련된 각종 소식과 정보, 학술·문화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보도, 중계, 제작, 공유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문방송국 운영 및 신문 발행, 방송 제작·송출(개정 2016.9.22.)
2. 방송국 운영 및 방송 제작·송출
3. 교내 뉴스, 공지사항, 학생들의 우수영상 제작, 교내외 행사중계, 자체 영상콘텐츠 제작
4. 대학 유관기관과의 콘텐츠 제작 및 교류(개정 2016.9.22.)

제3조(기구) ① 센터는 학생언론기구를 두며 명칭은 ‘동명대 신문방송국’으로 한다.(개정 2016.9.22.)

1. (삭제 2016.9.22.)
2. (삭제 2016.9.22.)

② 센터사업을 위해 필요한 기구를 따로 둘 수 있다.

제4조(구성) ①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,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신문방송국원을 둔다.(개정 2016.9.22.)

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신문방송국원을 지도·관리한다.(개정 2016.9.22.)

③ 간사는 센터장을 보좌하여 신문과 방송의 제작에 따른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.

④ 신문사 및 방송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5조(신문편집위원회) ① 동명대신문(이하 “신문”이라 한다)발행과 영상콘텐츠 제작 및 송출에 관한 자문을 위한 동명대신문방송편집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.(개정 2016.9.22.)

1. 신문의 지면 편집, 사실 및 칼럼 집필(신설 2016.9.22.)
2. 방송 제작, 편성, 송출에 대한 자문(신설 2016.9.22.)

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.

③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1인은 신문편집 주간교수로 한다.

④ 신문편집 주간교수는 위원장이 선임한다.

⑤ 총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 또는 주간교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.(개정 2016.9.22.)

⑥ 회의록 작성 및 기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를 두며, 센터장이 위촉한다.

⑦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소속 학생의 자격) 센터 소속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구비하여야 한다.

1. 동명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
2. 언행과 품행이 단정한 자
3. 징계 사실이 없는 자
4. 학생회 간부 및 기타 단체의 회원이 아닌 자

제7조(원고료 및 출연료) 발행된 기사와 방영된 방송 제작물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와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6일부터 폐지한다.